

행 정 자 치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2·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 한 자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

같은 법 제4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,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아래 [표]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사망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지 않았음에도

강원소 소방본부(○○○○과)에서는 과태료 처분 및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등의 조치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부 적정하게 하였다.

[표]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사망 현황

연번	소방서명	대상물명	소방안전관리자	사망일	과태료(천원)	비고
계					3,000	
1	춘천	○○빌딩 (○○○○○○)	○○○	2016.8.17.	1,000	
2	홍천	○○○	○○○	2016.5.5.	1,000	
3	평창	○○○클럽	○○○	2015.12.15.	1,000	

* 자료 : 강원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총 3,000천원을 부과하시고,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